

##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

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- 2026년 인증 신청기간: 연중 접수  
\* 인증심사: 연간 4회차 개최 예정(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)
- 2026년 인증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\*(www.seis.or.kr)  
\* 사회적기업 포털 로그인 ▶ 사업신청 ▶ 인증/지정 ▶ 공고 선택 ▶ 신청하기 ▶ 인증신청서/사실확인서/유급근로자명부 등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▶ 신청서 제출
-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포털 바로가기

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·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·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.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필요시, 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진흥원(센터)을 통해 사전상담 및 안내(유선)를 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
\* 단, 심사 공정성·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요건, 필수서류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만 유선 상담가능

##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상담 안내

전국 대표번호: 1551-2024

(해당 권역 진흥원(센터)으로 자동 연결)

###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현황

권역	센터명	주소	전화번호
서울, 인천	서울인천센터	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, 9층 소셜캠퍼스 온 서울1	02-467-2518
경기, 강원	경기강원센터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, 6층 소셜캠퍼스 온 경기	031-757-2543
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	광주전라제주센터	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, 5, 6층 소셜캠퍼스 온 광주	062-946-2173
세종, 대전, 충남, 충북	세종대전충청센터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&G세종타워A 6층 소셜캠퍼스 온 세종	044-903-0795
대구, 경북	대구경북센터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, 11층 소셜캠퍼스 온 대구	053-431-9826
부산, 울산, 경남	부산울산경남센터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, 5, 6층 소셜캠퍼스 온 부산	051-753-2505

##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

구분(관련 법령)	내용
정관 등 변경신고 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(정관등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(정관 등)의 기재사항 변경할 경우,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정관 등 변경 신고하여야 함</li> <li>사회적기업은 지부 설립, 폐업이 발생하였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지부 설립 및 폐업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</li> <li>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</li> </ul>
사업보고서 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(보고 등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은 매년 사회적기업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관련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' 참고</li> <li>*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(연 1회) 제출</li> </ul>
인증서 재발급 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(인증서의 재발급)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은 기관명, 대표자, 소재지, 조직형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, 사회적기업 포털(seis.or.kr)을 통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</li> <li>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'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' 참고</li> <li>*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 재발급 관련 공지사항 게시를 참고</li> </ul>



안내 모아보기

# 2026년도 사회적기업 안내

SOCIAL ENTERPRISE GUIDE



## 사회적기업이란

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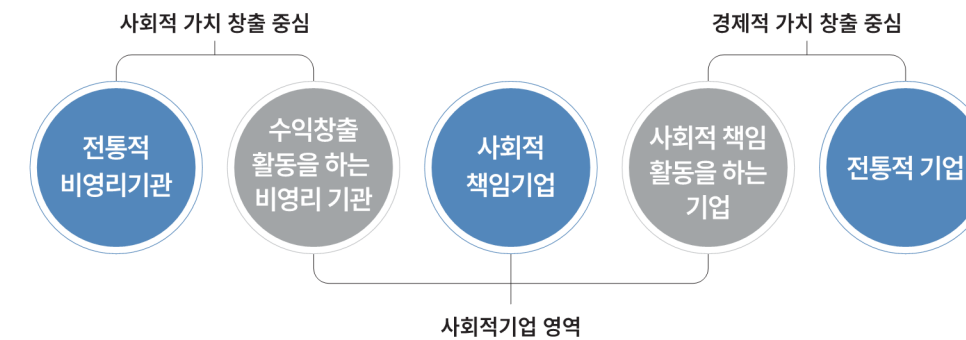
-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

### 사회적기업
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

### 예비사회적기업

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



###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

#### 목적

사회적 가치 실현,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공헌

#### 수단

경제활동, 이윤 창출 및 재투자

#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

## <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>

사회적기업	구분	예비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 육성법	법령	조례 또는 규칙, 지침
고용노동부 장관 인증	주관	광역자치단체장, 중앙행정기관장 지정
① 조직형태	요건	① 조직형태
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		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)
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		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(취약계층 고용·사회서비스 제공 등)
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	④ -
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(매출액이 노무비의 50% 이상)		⑤ -
⑥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		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·규약 등을 갖출 것
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		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)
상시 접수	신청	연중 일정 공고

## 1 조직형태

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
●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식회사</li> <li>유한회사</li> <li>유한책임회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명회사</li> <li>합자회사</li> <li>합자조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(어업)회사법인</li> <li>영농(영어)조합법인</li> <li>(사회적)협동조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단법인</li> <li>재단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법인</li> <li>공익법인</li> <li>비영리민간단체</li> </ul>
--	--	---	--	---

\*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## 2 유급근로자 고용

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
●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
\* 단,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

\*\*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함

●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

## 3 사회적 목적의 실현

●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
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</li> </ul>
일자리 제공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% 이상일 것</li> </ul>
지역사회 공헌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가형: 일자리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(가형: 서비스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(나형) 지역의 빈곤·낙후·소외·재난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li>(다형)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미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혼합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</li> </ul>
기타 (창의·혁신)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</li> <li>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되,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 동 유형으로 불인증</li> </ul>

● (취약계층 정의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

-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아래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신용자, 학교폭력 피해자, 학교 밖 청소년, 중증질환자,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

취약계층이란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소득자</li> <li>고령자</li> <li>장애인</li> <li>성매매피해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</li> <li>북한이탈주민</li> <li>가정폭력 피해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대상자</li> <li>결혼이민자</li> <li>강생보호 대상자</li> <li>범죄구조피해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타(정기실업자, 수형자, 소년원생, 보호관찰 청소년, 노숙인, 약물 등 중독자, 선천성 또는 후천성병치료자, 여성가장, 난민, 보호종료아동,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한 자 등)</li> </ul>

사회서비스란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</li> <li>보육</li> <li>보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</li> <li>환경</li> <li>문화예술, 관광 및 운동서비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소년 등 사업시설관리</li> <li>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</li> <li>간병 및 개인서비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사지원</li> <li>산림보전 및 관리</li> <li>기타</li> </ul>

사회적가치지표(SVI)란
- (개요)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·평가하는 지표
- (활용) 사회적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의 사업 연계 등 활용
- (구성) 총 14개 지표(사회적 성과(9개 지표, 60점), 경제적 성과(4개 지표, 30점), 혁신성과(1개 지표, 10점) 등 100점 만점) 구성
* 단, 기타(창의·혁신)형은 상기 지표 중 5개 지표(3, 4, 5, 6, 14번)만 측정

##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●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함

\* 법령상 의견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 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
●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 
\* '26.6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, 신청 직전월('26.5월)까지 ①근로자대표 선출, ②임원 취임 및 등기, ③이사회 개최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

##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●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

\* 단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노무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 (=매출액)</li> <li>* 보조금,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해당하지 않음</li> <li>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포함: 급여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</li> <li>제외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, 용역비 등</li> </ul>

● 단, 자본 완전잠식,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(매출액의 규모, 수익구조 등)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

## 6 정관의 필수사항

●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
● 필수사항:

- ① 목적, ② 사업내용, ③ 명칭,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⑤ 기관의 의사결정방식,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관한 사항, ⑦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,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,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,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●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

●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, 시설투자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
\*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의 경우에 해당함

\*\*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지정 이후 배분 가능한 이윤 사용내역 검토

# 사회적기업 지원제도

지원제도	지원 내용	지원 대상		
		예비	인증	
창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·멘토링·시장검증·사업화·인증준비를 지원</li> </ul>	-	-	
재정 지원	인건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~90만원 인건비 지원</li> <li>- 대상: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</li> <li>*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</li> </ul>	○	○
	유망기업 스탬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(디딤돌→도약→성숙기) 맞춤형 지원</li> </ul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디딤돌 지원 <small>초기 경영지원 (인사·노무·회계 등)</small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0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도약 지원 <small>사업화·전문화 지원 (R&amp;D·판로·마케팅 등)</small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0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성숙기 지원 <small>규모화 지원 및 공공·민간 상생모델 구축</small></div> </div>	○	○
경영 지원	이차보전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.5%p 지원</li> </ul>	○	○
	모태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</li> </ul>	○	○
	시설비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용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</li> <li>-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</li> </ul>	△ (미소 금융)	○
판로 지원	온·오프라인 매장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'가치장터' 및 'STORE36.5' 입점 지원, 홀쇼핑 연계 및 온라인을 기획전 운영, 전국 스토어 36.5 매장 입점 지원(75개소)</li> </ul>	○	○
	소셜벤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·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</li> </ul>	○	○
	지역특화 스타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대학·자치단체·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(서비스)를 발굴하고 '지역 스타 상품'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</li> </ul>	○	○
생태계 지원	맞춤형 마케팅 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·코칭,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</li> </ul>	○	○
	공공기관 우선구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·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</li> <li>- 대상)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 등('24년 850개소)</li> </ul>	-	○
	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돌봄,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·민간지원기관·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(지자체 공모 사업)</li> </ul>	○	○
세제지원	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(성과 보상 기준: 수도권 15%, 비수도권 20%까지 지원)</li> </ul>	○	○
	세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기업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 50% 감면</li> <li>취득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</li> <li>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</li> <li>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</li> </ul>	-	○